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63085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권○○
피 고	별지1 피고 명단과 같다.
변 론 종 결	2024. 3. 19.
판 결 선 고	2024. 7. 9.

주 문

1. 원고의 피고 19. ○○군수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2] 목록의 '①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의 '② 담배소비세 경정청구금액' 및 '③ 지방교육세 경정청구금액'란 기재 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담배제조업 영위

원고는 2002. 8. 29. ○○○○○장관으로부터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담배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위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당시 제조장 소재지를 '○○시 B'로 하였다가 2012. 8. 2. 이를 '○○시 C'(이하 '○○제조공장'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의 담배 제조 및 판매를 위한 기존 운송 과정과 이에 관한 담배소비세 등의 신고·납부 방식

1) 원고는 ○○제조공장에서 담배를 제조·포장한 후 이를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시 D(지번 주소로는 ○○시 E에 해당함)에 있는 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라 한다)로 옮긴 다음, 위 물류센터에서 일부 담배를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인 다른 물류센터로 옮긴 뒤 위 각 물류센터에서 보관하다가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이를 그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왔다.

2) 위와 같은 담배 운송 과정에서 원고는 ○○제조공장에서 담배 완제품을 각 물류센터로 옮길 때에는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에는 구 지방세법 제231조에 근거하여,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이후로는 구 지방세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이를 미납세 반출 담배로 신고하였다가, 각 물류센터에서

1) [별지2] 목록의 '③ 지방소비세'는 '③ 지방교육세'로 정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보관하던 담배를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해당 담배를 '미납세재고'에서 '납세재고'로 전환하여 각 도매업자 등의 영업소 등으로 출고시키는 동시에 이에 관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의 개정 경과와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

1) 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개별소비세법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으로 담배를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이하 '개정 전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담배 중 '제1종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641원(이하 '개정 전 담배소비세율'이라 한다)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4호는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각 규정되어 있었다.

2) 그런데 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일부개정된 구 개별소비세법은 제1조 제2항 제6호를 신설하여 위 조항 및 [별표]에 따라 '피우는 담배' 중 '제1종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일부개정된 구 지방세법(이하 '개정 후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담배 중 '제1종 궐련'에 대한 담배소비세율을 20개비당 1,007원(이하 '개정 후 담배소비세율'이라 한다)으로 인상하고, 제151조 제1항 제4호는 지방교육세율을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위 각 조항은 위 각 법률의 부칙에 따라 2015. 1. 1. 시행될 예정에 있었다.

3) 한편, ○○○○○장관은 2014. 9. 1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3조에 근거하여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등이 담배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대상으로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시한 종료일까지 지방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를 반출(지방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은 제외한다)함에 있어 매월 반출량이 2014. 1. 1.부터 2014. 8. 31.까지 기간의 월 평균 반출한 양의 104%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고, 위 고시의 부칙 제1조에 따라 위 고시는 2014. 9. 12.부터 담뱃값을 인상한 날까지 시행되었다.

라. 원고의 이 사건 담배 반출 행위 및 이에 관한 담배소비세 등의 신고·납부

1) 원고는 2014. 12.경부터 2014. 12. 31.까지 총 4,181,500갑의 담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담배'라고 한다)를 미납세 반출 담배로 신고한 후 ○○제조공장에서 ○○물류센터로 이동하였다. 이후 이 사건 담배는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순차적으로 도매상 등으로 배송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담배가 2015. 1. 1. 이후 ○○물류센터에서 도매상 등에게 배송됨으로써 반출되었음을 전제로 개정 후 구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 후 담배소비세율 등을 적용하여 [별지1] 목록의 '당초신고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들에게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담배소비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피고들의 거부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담배가 2015. 1. 1. 이전에 ○○제조공장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었는바 개정 전 구 지방세법에 따라 개정 전 담배소비세율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별지1] 목록의 '경정청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들에게 담배소비세 등의 차액 반환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개정 후 구 지방세법에 따라 담배소비세율은 인상되고 지방교육세율은 인하하였으나, 담배소비세율의 인상으로 담배소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세액이 증가하자 그에 따라 지방교육세액도 증가하였다).

2) 피고 19. ◯◯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2] 목록의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관련 판결

1) 과세관청은 원고가 2015. 1. 1. 이전 미납세 반출 담배로 신고한 후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인 물류센터로 이동하여 보관하던 담배를 실물의 반출 없이 반출한 것처럼 전산입력하고 개정 전 담배소비세율 등을 적용하여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개정 후 구 지방세법이 시행된 후 도매업자 등에게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개정 후 구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 후 담배소비세율 등이 적용된다고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에 원고가 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사실상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원고의 주위적 청구 각하, 예비적 청구 인용)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2506), 이에 쌍방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과 동일한 이유로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0누10650). 이에 쌍방이 모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미납세 반출한 담배의 경우에는 담배를 미납세 반출한 때가 아니라 그 담배를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 중 과세관청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항소심 법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2. 원고의 피고 19. ○○군수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19. ○○군수의 본안전항변

피고 19. ○○군수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피고 19. ○○군수에 대한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 28. 피고 19. ○○군수에게 경정청구를 한 사실, 피고 19. ○○군수가 2020. 2. 17.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였고, 다음날인 2020. 2. 18. 원고가 납부한 담배소비세 등에 가산금을 더하여 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19. ○○군수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지 않았는바, 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19. ○○군수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개정 후 구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 법률의 시행일인 2015. 1. 1.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만 개정 후 담배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원고의 제조장은 ○○제조공장에 한정될 뿐, ○○물류센터 등은 원고의 제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담배는 모두 2014. 12. 31. 이전에 원고의 제조장인 ○○제조공장에서 반출되었으므로, 개정 전 구 지방세법에 따라 개정 전 담배소비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관련 판결은 미납세 반출 담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미납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반출에 관한 개정 전, 후 지방세법 제53조 제1호는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에만 적용되고, '제조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러한 관행이 성립되지도 않았다. 즉, 이 사건 담배와 같이 '제조장인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인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미납세 반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담배의 경우 관련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2014. 12. 31. 이전에 원고의 제조장인 ○○제조공장에서 반출되었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개정 전 구 지방세법에 따라 개정 전 담배소비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가) 원칙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제4호는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후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4호, 제49조 제1항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후 구 지방세법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제52조 제1항 및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151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담배의 제조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이고, 개정 후 담배소비세율은 원칙적으로 '개정 후 구 지방세법의 시행일인 2015. 1. 1.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담배'에 적용된다.

나) 미납세 반출 담배의 경우

(1) 개정 전, 후 구 지방세법 제53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미납세 반출 제도를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제1호)을,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제2호)을,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제3호)을 들고 있다(2014. 12. 23.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 지방세법의 담배소비세 관련 조항 중 담배소비세율과 지방교육세율 관련 조항만이 개정되었으므로, 이하 세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개정 후 구 지방세법의 담배소비세 관련 조항만을 기재한다).

(2)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제60조 제1항은 '제조자는 매월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5. 12. 31. 행정자치부령 제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제조자의 담배소비세 신고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신고서의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란에는 미납세 반출 담배를 제외한 수량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다. 한편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제55조는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은 '반출신고는 과세대상 담배와 미납세 반출 대상 담배 및 면세대상 담배의 반출이 각각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미납세 반출한 담배의 경우에는 담배를 미납세 반출한 때가 아니라 그 담배를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 등 참조).

① 미납세 반출 제도는 담배소비세 등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과세유보조치로서, 담배소비세 등이 최종소비자를 담세자로 예정하여 과세되는 조세인 점을 감안하여, 담배 공급의 편의나 제조공정상 필요 등에 의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 등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을 허용함으로써 반출과세 원칙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② 납세의무는 조세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일단 성립하나, 이것은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 상태에 불과하고 국가가 이에 대하여 징수절차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립한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확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담배소비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제60조 제1항 등은 제조자가 매월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 중 '미납세 반출 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반출 수량을 기초로 담배소비세 과세표준과 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미납세 반출을 할 때 담배소비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한편,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제55조는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제60조 제1항의 담배소비세 신고 절차와 별도로 담배의 반출신고 절차를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서 반출신고 대상 '반출'에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괄호 부분은 미납세 반출의 절차적 요건인 '반출신고'에 관한 것으로, 담배소비세 등의 과세요건인 '제조장으로부터의 반출'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만일 미납세 반출이 담배소비세 등의 과세요건인 '제조장으로부터의 반출'에 해당한다면,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제55조에 위 괄호 부분을 둘 이유가 없다.

④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제53조 제2호는 미납세 반출 사유의 하나로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을 들고 있다. 이 경우 미납세 반출 시점을 담배소비세 등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보면, 미납세 반출한 담배의 개비수 등과 그 담배를 원료로 제조한 다른 담배의 개비수 등이 달라졌을 때 일단 성립한 담배소비세 등 납세의무의 범위가 여전히 유지되는지, 미납세 반출한 담배의 제조자와 그 담배를 원료로 제조한 다른 담배의 제조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지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2) 미납세 반출 담배 해당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해석하는 것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허용되지 않는다.

나) 앞서 든 증거들, 을너 제1 내지 4호증, 을소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담배는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제53조 제1호의 미납세 반출 담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①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제53조 제1호는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법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제53조는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위 법 개정 당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이는 제조장에서 보세구역(물류창고)으로 반출함을 미납세 반출로 보아 지방세 납부시기를 이월하여 기간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판매용 담배를 단순히 보관하기 위한 반출은 미납세 반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2015. 12. 29. 개정 전에는 '제조장에서 보세구역(물류창고)으로 반출하는 담배'도 미납세 반출 대상 담배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2) 관계 법령의 해석상 이 사건 담배가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제53조 제1호의 미납세 반출 담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관행이 성립하지 않았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제53조(미납세 반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54조 제1항에 따른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나. 「관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물품인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담배를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3.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

③ 원고도 이 사건 담배를 미납세 반출 담배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관련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담배가 미납세 반출 담배에 해당함을 전제로 주장을 하였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제53조가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조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담배도 미납세 반출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④ 원고는,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에 미납세 반출 규정을 적용한다면 제조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때에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미납세 반출 제도가 담배소비세 등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과세유보조치인 점, 관련 판결도 미납세 반출한 담배의 경우에는 담배를 미납세 반출한 때가 아니라 그 담배를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조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한 미납세 반출 담배의 경우 납세의무 근거 규정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3) 개정 후 구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 후 담배소비세율 등의 적용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담배는 미납세 반출 담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담배를 ○○제조공장에서 미납세 반출한 때가 아니라 그 담배를 반입장소인 ○○물류센터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담배는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물류센터에서 순차적으로 도매상 등으로 반출되었는바, 개정 후 구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 후 담배소비세율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9. ○○군수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판사 김○○

판사 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별지1]

피고 명단

1. ○○시장
2. ○○시장
3. ○○○시장
4. ○○시장
5. ○○도 ○○군수
6. ○○시장
7. ○○시장
8. ○○군수
9. ○○시장
10. ○○시장
11. ○○시장
12. ○○군수
13. ○○시장
14. ○○군수
15. ○○시장
16. ○○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17. ○○시장

18. ○○시장

19. ○○군수

20. ○○군수

21. ○○군수

22. ○○군수

23. ○○군수

24. ○○군수

25. ○○군수

26. ○○시장

27. ○○군수

28. ○○군수

29. ○○군수

30. ○○군수

31. ○○군수

32. ○○시장

33. ○○시장

34. ○○군수

35. ○○광역시장

피고 1, 35의 소송대리인 ○○○○공단

담당변호사 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36. ○○군수

37. ○○군수

38. ○○시장

39. ○○군수

40. ○○군수

41. ○○시장

42. ○○시장

43. ○○군수

44. ○○시장

45. ○○군수

46. ○○광역시장

47. ○○군수

48. ○○광역시장

49. ○○시장

50. ○○군수

51. ○○군수

52. ○○시 ○○구청장

53. ○○시장

54. ○○군수

55. ○○시장

56. ○○시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57. ○○군수

58. ○○시장

59. ○○시장

60. ○○시 ○○구청장

61. ○○군수

62. ○○시장

63. ○○군수

64. ○○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65. ○○시장

66. ○○군수

67. ○○시장

68. ○○시장

69. ○○군수

70. ○○군수

71. ○○군수

72. ○○시장

73. ○○시장

74. ○○시장

75. ○○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담당변호사 이○○

76. ○○시장

77. ○○시 ○○구청장

78. ○○시 ○○구청장

79. ○○시 ○○구청장

80. ○○광역시장

81. ○○군수

82. ○○군수

83. ○○시장

84. ○○시장

85. ○○군수

86. ○○군수

87. ○○시장

88. ○○시장

89. ○○시장

90. ○○시장

91. ○○시장

92. ○○시장

93. ○○○시장

94. ○○군수

95. ○○군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96. ○○시장

97. ○○특별자치도지사

98. ○○시장

99. ○○군수

100. ○○시장

101. ○○시장

102. ○○시장

103. ○○시장

104. ○○광역시장

105. ○○시장

106. ○○시장

107. ○○시장

108. ○○군수

109. ○○시장

110. ○○○시장

111. ○○군수

112. ○○군수

113. ○○시장

114. ○○시장

115. ○○시 ○○구청장

116. ○○군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117. ○○시장

118. ○○군수

119. ○○○도 ○○군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별지2]

No.	피고	① 거부처분일	당초신고일	경정청구일	반출기간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당초신고	경정신고	② 경정청구금액	당초신고	경정신고	③ 경정청구금액
1	○○시장	2020-02-05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84,944,930	81,557,910	3,387,020	37,367,270	36,233,830	1,133,440
		2020-02-05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376,211,530	375,781,780	429,750	165,495,450	165,351,630	143,820
		2020-02-05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641,999,150	630,298,840	11,700,310	282,415,420	278,500,000	3,915,420
		2020-02-05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849,661,250	837,783,350	11,877,900	373,765,980	369,791,130	3,974,850
		2020-02-05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972,730,770	969,660,250	3,070,520	427,904,260	426,876,730	1,027,530
2	○○시장	2020-02-05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45,411,540	43,600,840	1,810,700	19,976,530	19,370,590	605,940
		2020-02-05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193,936,990	193,715,450	221,540	85,312,880	85,238,740	74,140
		2020-02-05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332,230,070	326,175,240	6,054,830	146,148,000	144,121,800	2,026,200
		2020-02-05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432,895,170	426,843,490	6,051,680	190,430,580	188,405,430	2,025,150
		2020-02-05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502,590,810	501,004,330	1,586,480	221,089,690	220,558,790	530,900
3	○○○시장	2020-02-10	2015-02.~ 2015.06.	2020-01-28	2015년1월	38,086,420	36,567,790	1,518,630	16,754,210	16,246,010	508,200
		2020-02-10		2020-01-28	2015년2월	175,569,300	175,368,750	200,550	77,232,930	77,165,820	67,110
		2020-02-10		2020-01-28	2015년3월	289,401,770	284,127,470	5,274,300	127,307,830	125,542,830	1,765,000
		2020-02-10		2020-01-28	2015년4월	397,308,510	391,754,310	5,554,200	174,776,010	172,917,340	1,858,670
		2020-02-10		2020-01-28	2015년5월	489,633,180	488,087,600	1,545,580	215,389,630	214,872,420	517,210
4	○○시장	2020-02-10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10,548,300	10,127,700	420,600	4,640,190	4,499,440	140,750
		2020-02-10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48,978,550	48,922,600	55,950	21,545,660	21,526,940	18,720
		2020-02-10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76,073,210	74,686,790	1,386,420	33,464,600	33,000,650	463,950
		2020-02-10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106,216,200	104,731,340	1,484,860	46,724,500	46,227,610	496,890
		2020-02-10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124,874,680	124,480,500	394,180	54,932,370	54,800,460	131,9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No.	피고	① 거부처분일	당초신고일	경정청구일	반출기간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당초신고	경정신고	② 경정청구금액	당초신고	경정신고	③ 경정청구금액
5	○○도 ○○군수	2020-02-14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1,470,340	1,411,710	58,630	646,800	627,180	19,620
		2020-02-14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10,060,090	10,048,590	11,500	4,425,430	4,421,580	3,850
		2020-02-14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21,441,170	21,050,410	390,760	9,431,970	9,301,200	130,770
		2020-02-14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29,993,860	29,574,560	419,300	13,194,300	13,053,980	140,320
		2020-02-14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36,776,670	36,660,580	116,090	16,178,050	16,139,210	38,840
6	○○시장	2020-02-11	2015-03-02	2020-01-29	2015년1월	21,798,450	20,929,280	869,170	9,589,140	9,298,270	290,870
		2020-02-11	2015-03-31	2020-01-29	2015년2월	102,714,320	102,596,990	117,330	45,184,030	45,144,760	39,270
		2020-02-11	2015-04-30	2020-01-29	2015년3월	175,727,180	172,524,590	3,202,590	77,302,380	76,230,660	1,071,720
		2020-02-11	2015-06-01	2020-01-29	2015년4월	231,925,130	228,682,920	3,242,210	102,023,860	100,938,880	1,084,980
		2020-02-11	2015-06-30	2020-01-29	2015년5월	259,508,600	258,689,440	819,160	114,157,830	113,883,700	274,130
7	○○시장	2020-02-11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25,598,030	24,577,350	1,020,680	11,260,570	10,919,010	341,560
		2020-02-11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109,286,960	109,162,120	124,840	48,075,330	48,033,550	41,780
		2020-02-11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183,527,190	180,182,450	3,344,740	80,733,610	79,614,310	1,119,300
		2020-02-11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245,457,760	242,026,370	3,431,390	107,976,870	106,828,580	1,148,290
		2020-02-11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272,678,920	271,818,180	860,740	119,951,450	119,663,410	288,040
8	○○군수	2020-02-11	2015-03-02	2020-01-29	2015년1월	6,628,500	6,364,200	264,300	2,915,870	2,827,430	88,440
		2020-02-11	2015-03-31	2020-01-29	2015년2월	28,204,390	28,172,170	32,220	12,407,110	12,396,330	10,780
		2020-02-11	2015-04-30	2020-01-29	2015년3월	46,541,480	45,693,270	848,210	20,473,590	20,189,750	283,840
		2020-02-11	2015-06-01	2020-01-29	2015년4월	63,161,190	62,278,220	882,970	27,784,600	27,489,130	295,470
		2020-02-11	2015-06-30	2020-01-29	2015년5월	69,813,310	69,592,940	220,370	30,710,870	30,637,130	73,740
9	○○시장	2020-02-14	2015-03-02	2020-01-29	2015년1월	22,885,970	21,973,430	912,540	10,067,530	9,762,160	305,370
		2020-02-14		2020-01-29	2015년2월	100,897,560	100,782,300	115,260	44,384,830	44,346,260	38,570
		2020-02-14		2020-01-29	2015년3월	182,597,450	179,269,640	3,327,810	80,324,610	79,210,990	1,113,620

대한민국법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No.	피고	① 거부처분일	당초신고일	경정청구일	반출기간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당초신고	경정신고	② 경정청구금액	당초신고	경정신고	③ 경정청구금액
		2020-02-14		2020-01-29	2015년4월	227,759,840	224,575,850	3,183,990	100,191,550	99,126,050	1,065,500
		2020-02-14		2020-01-29	2015년5월	255,642,400	254,835,440	806,960	112,457,090	112,187,050	270,040
10	○○시장	2020-02-14	2015.3.2.~2015.6.30.	2020-01-23	2015년1월	12,125,160	11,641,690	483,470	5,333,860	5,172,070	161,790
		2020-02-14		2020-01-23	2015년2월	64,005,760	63,932,650	73,110	28,156,130	28,131,660	24,470
		2020-02-14		2020-01-23	2015년3월	126,261,060	123,959,970	2,301,090	55,542,240	54,772,190	770,050
		2020-02-14		2020-01-23	2015년4월	172,403,680	169,993,550	2,410,130	75,840,370	75,033,840	806,530
		2020-02-14		2020-01-23	2015년5월	209,024,490	208,364,680	659,810	91,949,870	91,729,070	220,800
11	○○시장	2020-02-14	2015.3.2.외 4건	2020-01-23	2015년1월	6,439,630	6,182,870	256,760	2,832,790	2,746,870	85,920
		2020-02-14		2020-01-23	2015년2월	32,907,670	32,870,080	37,590	14,476,080	14,463,500	12,580
		2020-02-14		2020-01-23	2015년3월	54,095,690	53,109,810	985,880	23,796,690	23,466,770	329,920
		2020-02-14		2020-01-23	2015년4월	73,560,740	72,532,390	1,028,350	32,359,370	32,015,240	344,130
		2020-02-14		2020-01-23	2015년5월	95,065,280	94,765,200	300,080	41,819,210	41,718,790	100,420
12	○○군수	2020-02-14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3,772,570	3,622,150	150,420	1,659,550	1,609,210	50,340
		2020-02-14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17,918,210	17,897,740	20,470	7,882,220	7,875,370	6,850
		2020-02-14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26,031,800	25,557,380	474,420	11,451,390	11,292,620	158,770
		2020-02-14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35,577,540	35,080,180	497,360	15,650,560	15,484,120	166,440
		2020-02-14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44,193,650	44,054,150	139,500	19,440,780	19,394,100	46,680
13	○○시장	2020-02-14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19,839,030	19,047,980	791,050	8,727,180	8,462,470	264,710
		2020-02-14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86,230,820	86,132,320	98,500	37,932,940	37,899,970	32,970
		2020-02-14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136,424,370	133,938,060	2,486,310	60,013,080	59,181,050	832,030
		2020-02-14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182,690,560	180,136,630	2,553,930	80,365,580	79,510,920	854,660
		2020-02-14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202,314,060	201,675,440	638,620	88,997,950	88,784,240	213,7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No.	피고	① 거부처분일	당초신고일	경정청구일	반출기간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당초신고	경정신고	② 경정청구금액	당초신고	경정신고	③ 경정청구금액
14	○○군수	2020-02-19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1,467,520	1,409,000	58,520	645,560	625,980	19,580
		2020-02-19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8,160,170	8,150,840	9,330	3,589,650	3,586,530	3,120
		2020-02-19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14,489,550	14,225,480	264,070	6,373,950	6,285,580	88,370
		2020-02-19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21,416,460	21,117,070	299,390	9,421,100	9,320,910	100,190
		2020-02-19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27,881,700	27,793,690	88,010	12,265,160	12,235,710	29,450
15	○○시장	2020-02-19	2015-03-02	2020-02-12	2015년1월	23,435,360	22,500,920	934,440	10,309,210	9,996,510	312,700
		2020-02-19	2015-03-31	2020-02-12	2015년2월	118,150,550	118,015,590	134,960	51,974,430	51,929,260	45,170
		2020-02-19	2015-04-30	2020-02-12	2015년3월	212,472,600	208,600,330	3,872,270	93,466,690	92,170,870	1,295,820
		2020-02-19	2015-06-01	2020-02-12	2015년4월	281,886,470	277,945,820	3,940,650	124,001,850	122,683,140	1,318,710
		2020-02-19	2015-06-30	2020-02-12	2015년5월	338,109,640	337,042,360	1,067,280	148,734,430	148,377,270	357,160
16	○○특별시장	2020-02-27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906,098,670	869,968,890	36,129,780	398,593,232	386,502,140	12,091,092
		2020-02-27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3,837,129,020	3,832,745,000	4,384,020	1,687,953,525	1,686,485,890	1,467,635
		2020-02-27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6,789,705,270	6,665,963,370	123,741,900	2,986,791,838	2,945,381,910	41,409,928
		2020-02-27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8,951,034,390	8,825,902,040	125,132,350	3,937,560,477	3,895,685,280	41,875,197
		2020-02-27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10,826,183,840	10,792,009,110	34,174,730	4,762,438,748	4,751,001,850	11,436,898
17	○○시장	2020-02-27	2015-03-02	2020-01-28	2015년1월	8,447,420	8,110,590	336,830	3,716,020	3,603,300	112,720
		2020-02-27	2015-03-31	2020-01-28	2015년2월	38,166,490	38,122,890	43,600	16,789,440	16,774,850	14,590
		2020-02-27	2015-04-30	2020-01-28	2015년3월	75,657,150	74,278,310	1,378,840	33,281,580	32,820,160	461,420
		2020-02-27	2015-06-01	2020-01-28	2015년4월	98,113,550	96,741,970	1,371,580	43,160,150	42,701,160	458,990
		2020-02-27	2015-06-30	2020-01-28	2015년5월	118,961,830	118,586,310	375,520	52,331,310	52,205,640	125,670
18	○○시장	2020-02-27	2015-03-02	2020-02-10	2015년1월	25,722,150	24,696,520	1,025,630	11,315,170	10,971,950	343,220
		2020-02-27	2015-03-31	2020-02-10	2015년2월	108,827,150	108,702,830	124,320	47,873,060	47,831,460	41,6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No.	피고	① 거부처분일	당초신고일	경정청구일	반출기간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당초신고	경정신고	② 경정청구금액	당초신고	경정신고	③ 경정청구금액
		2020-02-27	2015-04-30	2020-02-10	2015년3월	198,514,750	194,896,850	3,617,900	87,326,630	86,115,930	1,210,700
		2020-02-27	2015-06-01	2020-02-10	2015년4월	262,786,440	259,112,800	3,673,640	115,599,750	114,370,390	1,229,360
		2020-02-27	2015-06-30	2020-02-10	2015년5월	306,073,340	305,107,190	966,150	134,641,660	134,318,350	323,310
19	○○군수	2020-02-26	2015-03-02	2020-01-28	2015년1월	2,648,920	2,543,300	105,620	1,165,260	1,129,910	35,350
		2020-02-26	2015-03-31	2020-01-28	2015년2월	14,153,430	14,137,260	16,170	6,226,090	6,220,680	5,410
		2020-02-26	2015-04-30	2020-01-28	2015년3월	22,212,860	21,808,030	404,830	9,771,430	9,635,960	135,470
		2020-02-26	2015-06-01	2020-01-28	2015년4월	33,713,060	33,241,760	471,300	14,830,370	14,672,660	157,710
		2020-02-26	2015-06-30	2020-01-28	2015년5월	42,942,760	42,807,210	135,550	18,890,520	18,845,160	45,360
20	○○군수	2020-02-26	2015-03-02	2020-01-29	2015년1월	1,444,550	1,386,950	57,600	635,450	616,180	19,270
		2020-02-26	2015-03-31	2020-01-29	2015년2월	7,450,000	7,441,490	8,510	3,277,250	3,274,400	2,850
		2020-02-26	2015-04-30	2020-01-29	2015년3월	12,491,750	12,264,090	227,660	5,495,120	5,418,930	76,190
		2020-02-26	2015-06-01	2020-01-29	2015년4월	18,958,060	18,693,030	265,030	8,339,650	8,250,960	88,690
		2020-02-26	2015-06-30	2020-01-29	2015년5월	25,081,640	25,002,460	79,180	11,033,410	11,006,910	26,500
21	○○군수	2020-02-26	2015.02.28. ~2015.06.24	2020-01-28	2015년1월	1,626,430	1,561,580	64,850	715,460	693,760	21,700
		2020-02-26		2020-01-28	2015년2월	11,032,290	11,019,690	12,600	4,853,100	4,848,890	4,210
		2020-02-26		2020-01-28	2015년3월	18,866,920	18,523,080	343,840	8,299,560	8,184,490	115,070
		2020-02-26		2020-01-28	2015년4월	25,357,730	25,003,240	354,490	11,154,860	11,036,230	118,630
		2020-02-26		2020-01-28	2015년5월	31,449,600	31,350,330	99,270	13,834,680	13,801,460	33,220
22	○○군수	2020-02-26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9,444,400	9,067,820	376,580	4,154,590	4,028,570	126,020
		2020-02-26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42,691,780	42,643,010	48,770	18,780,110	18,763,790	16,320
		2020-02-26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79,067,580	77,626,590	1,440,990	34,781,830	34,299,610	482,220
		2020-02-26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105,547,380	104,071,880	1,475,500	46,430,290	45,936,520	493,770
		2020-02-26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130,077,380	129,666,780	410,600	57,221,040	57,083,630	137,410

대한민국법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No.	피고	① 거부처분일	당초신고일	경정청구일	반출기간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당초신고	경정신고	② 경정청구금액	당초신고	경정신고	③ 경정청구금액
23	○○군수	2020-03-03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2,108,930	2,024,840	84,090	927,720	899,580	28,140
		2020-03-03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8,904,040	8,893,870	10,170	3,916,890	3,913,480	3,410
		2020-03-03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15,923,110	15,632,910	290,200	7,004,570	6,907,460	97,110
		2020-03-03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23,584,420	23,254,720	329,700	10,374,780	10,264,450	110,330
		2020-03-03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26,387,490	26,304,200	83,290	11,607,860	11,579,980	27,880
24	○○군수	2020-03-03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13,383,270	12,849,630	533,640	5,887,300	5,708,720	178,580
		2020-03-03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62,590,370	62,518,880	71,490	27,533,500	27,509,580	23,920
		2020-03-03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116,989,720	114,857,600	2,132,120	51,463,770	50,750,280	713,490
		2020-03-03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154,333,900	152,176,380	2,157,520	67,891,480	67,169,480	722,000
		2020-03-03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174,976,680	174,424,350	552,330	76,972,240	76,787,410	184,830
25	○○군수	2020-03-03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915,430	878,930	36,500	402,700	390,480	12,220
		2020-03-03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4,962,170	4,956,500	5,670	2,182,860	2,180,960	1,900
		2020-03-03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8,051,040	7,904,310	146,730	3,541,650	3,492,550	49,100
		2020-03-03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13,853,040	13,659,380	193,660	6,093,950	6,029,140	64,810
		2020-03-03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17,787,220	17,731,080	56,140	7,824,600	7,805,810	18,790
26	○○시장	2020-03-03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26,631,810	25,569,920	1,061,890	11,715,330	11,359,980	355,350
		2020-03-03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118,747,000	118,611,360	135,640	52,236,800	52,191,410	45,390
		2020-03-03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238,323,690	233,980,280	4,343,410	104,838,590	103,385,100	1,453,490
		2020-03-03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294,570,550	290,452,580	4,117,970	129,581,580	128,203,530	1,378,050
		2020-03-03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334,826,520	333,769,610	1,056,910	147,290,180	146,936,500	353,680
27	○○군수	2020-03-03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3,022,350	2,901,840	120,510	1,329,530	1,289,200	40,330
		2020-03-03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15,135,980	15,118,690	17,290	6,658,310	6,652,530	5,780
		2020-03-03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27,314,850	26,817,050	497,800	12,015,800	11,849,210	166,590

대한민국법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No.	피고	① 거부처분일	당초신고일	경정청구일	반출기간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당초신고	경정신고	② 경정청구금액	당초신고	경정신고	③ 경정청구금액
		2020-03-03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45,699,660	45,060,800	638,860	20,103,280	19,889,490	213,790
		2020-03-03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50,117,320	49,959,120	158,200	22,046,600	21,993,660	52,940
28	○○군수	2020-03-03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2,240,570	2,151,230	89,340	985,620	955,730	29,890
		2020-03-03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9,598,480	9,587,510	10,970	4,222,370	4,218,700	3,670
		2020-03-03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21,454,530	21,063,530	391,000	9,437,850	9,307,000	130,850
		2020-03-03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31,473,460	31,033,480	439,980	13,845,170	13,697,940	147,230
		2020-03-03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36,657,710	36,542,000	115,710	16,125,720	16,087,000	38,720
29	○○군수	2020-03-03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161,190	154,760	6,430	70,900	68,750	2,150
		2020-03-03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1,123,680	1,122,390	1,290	494,300	493,870	430
		2020-03-03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1,940,850	1,905,470	35,380	853,780	841,940	11,840
		2020-03-03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2,452,540	2,418,260	34,280	1,078,870	1,067,400	11,470
		2020-03-03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3,496,700	3,485,660	11,040	1,538,200	1,534,500	3,700
30	○○군수	2020-03-03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7,253,920	6,964,690	289,230	3,191,000	3,094,210	96,790
		2020-03-03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32,912,160	32,874,560	37,600	14,478,060	14,465,480	12,580
		2020-03-03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54,015,500	53,031,080	984,420	23,761,420	23,431,990	329,430
		2020-03-03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72,895,830	71,876,780	1,019,050	32,066,870	31,725,850	341,020
		2020-03-03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82,281,580	82,021,860	259,720	36,195,670	36,108,750	86,920
31	○○군수	2020-03-03	2015-02-25	2020-01-23	2015년1월	408,350	392,070	16,280	179,630	174,180	5,450
		2020-03-03	2015-03-26	2020-01-23	2015년2월	2,773,240	2,770,070	3,170	1,219,950	1,218,890	1,060
		2020-03-03	2015-04-28	2020-01-23	2015년3월	4,542,400	4,459,610	82,790	1,998,200	1,970,500	27,700
		2020-03-03	2015-05-27	2020-01-23	2015년4월	6,496,700	6,405,880	90,820	2,857,900	2,827,500	30,400
		2020-03-03	2015-06-24	2020-01-23	2015년5월	8,903,970	8,875,870	28,100	3,916,850	3,907,450	9,4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No.	피고	① 거부처분일	당초신고일	경정청구일	반출기간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당초신고	경정신고	② 경정청구금액	당초신고	경정신고	③ 경정청구금액
32	○○시장	2020-03-03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5,974,190	5,735,980	238,210	2,628,040	2,548,330	79,710
		2020-03-03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27,930,210	27,898,300	31,910	12,286,500	12,275,820	10,680
		2020-03-03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53,665,680	52,687,630	978,050	23,607,530	23,280,230	327,300
		2020-03-03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74,942,660	73,894,990	1,047,670	32,967,270	32,616,680	350,590
		2020-03-03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89,449,830	89,167,470	282,360	39,348,980	39,254,490	94,490
33	○○시장	2020-03-03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6,787,000	6,516,380	270,620	2,985,600	2,895,040	90,560
		2020-03-03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26,882,940	26,852,230	30,710	11,825,800	11,815,530	10,270
		2020-03-03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45,989,440	45,151,290	838,150	20,230,750	19,950,270	280,480
		2020-03-03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64,147,810	63,251,050	896,760	28,218,620	27,918,520	300,100
		2020-03-03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75,431,470	75,193,360	238,110	33,182,300	33,102,620	79,680
34	○○군수	2020-03-03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6,593,170	6,330,280	262,890	2,900,330	2,812,360	87,970
		2020-03-03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27,128,350	27,097,360	30,990	11,933,760	11,923,390	10,370
		2020-03-03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52,241,420	51,289,330	952,090	22,981,000	22,662,390	318,610
		2020-03-03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69,958,120	68,980,130	977,990	30,774,570	30,447,300	327,270
		2020-03-03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88,805,460	88,525,140	280,320	39,065,520	38,971,710	93,810
35	○○광역시장	2020-03-03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276,658,380	265,627,130	11,031,250	121,702,020	118,010,490	3,691,530
		2020-03-03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1,178,413,660	1,177,067,540	1,346,120	518,384,160	517,933,700	450,460
		2020-03-03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1,952,140,840	1,916,563,440	35,577,400	858,746,750	846,841,030	11,905,720
		2020-03-03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2,637,989,150	2,601,111,220	36,877,930	1,160,451,420	1,148,110,490	12,340,930
		2020-03-03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2,970,012,020	2,960,636,900	9,375,120	1,306,508,290	1,303,370,970	3,137,320
36	○○군수	2020-03-04	2015-03-02	2020-01-29	2015년1월	2,611,180	2,507,060	104,120	1,148,650	1,113,810	34,840
		2020-03-04	2015-03-31	2020-01-29	2015년2월	14,430,760	14,414,270	16,490	6,348,090	6,342,570	5,520
		2020-03-04	2015-04-30	2020-01-29	2015년3월	22,334,310	21,927,270	407,040	9,824,860	9,688,650	136,210

대한민국법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No.	피고	① 거부처분일	당초신고일	경정청구일	반출기간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당초신고	경정신고	② 경정청구금액	당초신고	경정신고	③ 경정청구금액
		2020-03-04	2015-06-01	2020-01-29	2015년4월	30,855,440	30,424,100	431,340	13,573,310	13,428,960	144,350
		2020-03-04	2015-06-30	2020-01-29	2015년5월	33,313,310	33,208,150	105,160	14,654,520	14,619,330	35,190
37	○○군수	2020-03-04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4,696,740	4,509,470	187,270	2,066,090	2,003,420	62,670
		2020-03-04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23,897,990	23,870,690	27,300	10,512,720	10,503,590	9,130
		2020-03-04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35,734,890	35,083,630	651,260	15,719,780	15,501,840	217,940
		2020-03-04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51,623,280	50,901,610	721,670	22,709,080	22,467,580	241,500
		2020-03-04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66,121,950	65,913,230	208,720	29,087,040	29,017,190	69,850
38	○○시장	2020-03-04	2015-03-02	2020-01-28	2015년1월	2,334,330	2,241,250	93,080	1,026,870	995,720	31,150
		2020-03-04	2015-03-31	2020-01-28	2015년2월	13,286,850	13,271,670	15,180	5,844,880	5,839,800	5,080
		2020-03-04	2015-04-30	2020-01-28	2015년3월	20,426,580	20,054,310	372,270	8,985,650	8,861,070	124,580
		2020-03-04	2015-06-01	2020-01-28	2015년4월	28,258,320	27,863,290	395,030	12,430,830	12,298,640	132,190
		2020-03-04	2015-06-30	2020-01-28	2015년5월	37,027,210	36,910,330	116,880	16,288,270	16,249,150	39,120
39	○○군수	2020-03-04	2015-02-03	2020-01-23	2015년1월	390,890	375,300	15,590	171,950	166,730	5,220
		2020-03-04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2,411,410	2,408,660	2,750	1,060,780	1,059,860	920
		2020-03-04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4,153,650	4,077,950	75,700	1,827,190	1,801,850	25,340
		2020-03-04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6,160,670	6,074,540	86,130	2,710,070	2,681,250	28,820
		2020-03-04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7,092,540	7,070,150	22,390	3,120,000	3,112,510	7,490
40	○○군수	2020-03-04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1,849,010	1,775,280	73,730	813,380	788,700	24,680
		2020-03-04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8,874,830	8,864,690	10,140	3,904,030	3,900,640	3,390
		2020-03-04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16,633,200	16,330,070	303,130	7,316,940	7,215,500	101,440
		2020-03-04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22,573,050	22,257,490	315,560	9,929,880	9,824,280	105,600
		2020-03-04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26,783,130	26,698,580	84,550	11,781,890	11,753,600	28,29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No.	피고	① 거부처분일	당초신고일	경정청구일	반출기간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당초신고	경정신고	② 경정청구금액	당초신고	경정신고	③ 경정청구금액
41	○○시장	2020-03-04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23,821,420	22,871,580	949,840	10,479,040	10,161,180	317,860
		2020-03-04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106,183,800	106,062,510	121,290	46,710,250	46,669,660	40,590
		2020-03-04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189,426,450	185,974,190	3,452,260	83,328,690	82,173,420	1,155,270
		2020-03-04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251,548,100	248,031,570	3,516,530	110,656,010	109,479,220	1,176,790
		2020-03-04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292,609,230	291,685,580	923,650	128,718,800	128,409,700	309,100
42	○○시장	2020-03-04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9,701,090	9,314,280	386,810	4,267,510	4,138,060	129,450
		2020-03-04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44,800,260	44,749,080	51,180	19,707,630	19,690,500	17,130
		2020-03-04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79,848,570	78,393,350	1,455,220	35,125,380	34,638,400	486,980
		2020-03-04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111,409,790	109,852,330	1,557,460	49,009,160	48,487,970	521,190
		2020-03-04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123,971,670	123,580,340	391,330	54,535,130	54,404,180	130,950
43	○○군수	2020-03-04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4,431,180	4,254,490	176,690	1,949,270	1,890,140	59,130
		2020-03-04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22,370,240	22,344,680	25,560	9,840,660	9,832,110	8,550
		2020-03-04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38,249,860	37,552,770	697,090	16,826,110	16,592,830	233,280
		2020-03-04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51,049,550	50,335,900	713,650	22,456,690	22,217,880	238,810
		2020-03-04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63,421,010	63,220,820	200,190	27,898,900	27,831,910	66,990
44	○○시장	2020-03-04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12,466,350	11,969,280	497,070	5,483,950	5,317,600	166,350
		2020-03-04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54,378,060	54,315,950	62,110	23,920,910	23,900,120	20,790
		2020-03-04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97,190,130	95,418,860	1,771,270	42,753,940	42,161,190	592,750
		2020-03-04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133,432,550	131,567,230	1,865,320	58,696,980	58,072,760	624,220
		2020-03-04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155,188,760	154,698,900	489,860	68,267,530	68,103,600	163,930
45	○○군수	2020-03-04	2015-03-02	2020-01-28	2015년1월	23,145,350	22,222,470	922,880	10,181,640	9,872,800	308,840
		2020-03-04	2015-03-31	2020-01-28	2015년2월	97,346,270	97,235,070	111,200	42,822,620	42,785,410	37,210
		2020-03-04	2015-04-30	2020-01-28	2015년3월	166,873,650	163,832,410	3,041,240	73,407,720	72,389,990	1,017,730

대한민국법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No.	피고	① 거부처분일	당초신고일	경정청구일	반출기간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당초신고	경정신고	② 경정청구금액	당초신고	경정신고	③ 경정청구금액
		2020-03-04	2015-06-01	2020-01-28	2015년4월	223,675,950	220,549,060	3,126,890	98,395,050	97,348,660	1,046,390
		2020-03-04	2015-06-30	2020-01-28	2015년5월	248,135,300	247,352,040	783,260	109,154,720	108,892,600	262,120
46	○○광역시장	2020-03-06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208,221,300	199,918,850	8,302,450	91,596,550	88,818,190	2,778,360
		2020-03-06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927,238,150	926,178,950	1,059,200	407,892,060	407,537,610	354,450
		2020-03-06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1,587,633,950	1,558,699,620	28,934,330	698,400,170	688,717,500	9,682,670
		2020-03-06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2,156,350,440	2,126,205,610	30,144,830	948,578,550	938,490,800	10,087,750
		2020-03-06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2,560,780,500	2,552,697,150	8,083,350	1,126,487,340	1,123,782,310	2,705,030
47	○○군수	2020-03-06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17,187,950	16,502,610	685,340	7,560,980	7,331,630	229,350
		2020-03-06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66,228,400	66,152,750	75,650	29,133,870	29,108,550	25,320
		2020-03-06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122,716,390	120,479,900	2,236,490	53,982,940	53,234,510	748,430
		2020-03-06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170,909,750	168,520,500	2,389,250	75,183,190	74,383,650	799,540
		2020-03-06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197,658,400	197,034,470	623,930	86,949,930	86,741,130	208,800
48	○○광역시장	2020-03-06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112,846,000	108,346,470	4,499,530	49,640,950	48,135,220	1,505,730
		2020-03-06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480,123,250	479,574,800	548,450	211,206,210	211,022,680	183,530
		2020-03-06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843,158,460	827,792,050	15,366,410	370,905,400	365,763,140	5,142,260
		2020-03-06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1,133,133,470	1,117,292,760	15,840,710	498,465,410	493,164,430	5,300,980
		2020-03-06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1,305,182,600	1,301,062,670	4,119,930	574,149,820	572,771,120	1,378,700
49	○○시장	2020-03-06	2015-03-02	2020-01-28	2015년1월	64,469,190	61,898,600	2,570,590	28,359,990	27,499,760	860,230
		2020-03-06	2015-03-31	2020-01-28	2015년2월	282,094,710	281,772,470	322,240	124,093,460	123,985,620	107,840
		2020-03-06	2015-04-30	2020-01-28	2015년3월	484,812,320	475,976,710	8,835,610	213,268,940	210,312,160	2,956,780
		2020-03-06	2015-06-01	2020-01-28	2015년4월	654,407,080	645,258,750	9,148,330	287,873,670	284,812,250	3,061,420
		2020-03-06	2015-06-30	2020-01-28	2015년5월	778,620,440	776,162,650	2,457,790	342,515,130	341,692,650	822,48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No.	피고	① 거부처분일	당초신고일	경정청구일	반출기간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당초신고	경정신고	② 경정청구금액	당초신고	경정신고	③ 경정청구금액
50	○○군수	2020-03-06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4,506,670	4,326,970	179,700	1,982,480	1,922,350	60,130
		2020-03-06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24,576,250	24,548,170	28,080	10,811,090	10,801,690	9,400
		2020-03-06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45,056,210	44,235,070	821,140	19,820,220	19,545,430	274,790
		2020-03-06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62,100,980	61,232,840	868,140	27,318,220	27,027,700	290,520
		2020-03-06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73,955,280	73,721,840	233,440	32,532,930	32,454,810	78,120
51	○○군수	2020-03-06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3,498,270	3,358,790	139,480	1,538,890	1,492,210	46,680
		2020-03-06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16,485,740	16,466,910	18,830	7,252,080	7,245,770	6,310
		2020-03-06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22,060,610	21,658,560	402,050	9,704,460	9,569,920	134,540
		2020-03-06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32,838,450	32,379,380	459,070	14,445,630	14,292,010	153,620
		2020-03-06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43,323,080	43,186,320	136,760	19,057,820	19,012,050	45,770
52	○○시 ○○구청장	2020-03-06	2015-03-02	2020-01-29	2015년1월	87,661,690	84,166,340	3,495,350	38,562,380	37,392,680	1,169,700
		2020-03-06	2015-03-31	2020-01-29	2015년2월	382,945,970	382,508,530	437,440	168,457,930	168,311,540	146,390
		2020-03-06	2015-04-30	2020-01-29	2015년3월	674,073,740	661,788,880	12,284,860	296,525,040	292,413,990	4,111,050
		2020-03-06	2015-06-01	2020-01-29	2015년4월	889,173,540	876,743,290	12,430,250	391,147,440	386,987,740	4,159,700
		2020-03-06	2015-06-30	2020-01-29	2015년5월	1,070,051,790	1,066,674,070	3,377,720	470,715,780	469,585,450	1,130,330
53	○○시장	2020-03-11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26,489,560	25,433,340	1,056,220	11,652,750	11,299,300	353,450
		2020-03-11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117,816,150	117,681,560	134,590	51,827,320	51,782,280	45,040
		2020-03-11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218,869,270	214,880,420	3,988,850	96,280,590	94,945,750	1,334,840
		2020-03-11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299,117,460	294,935,930	4,181,530	131,581,770	130,182,450	1,399,320
		2020-03-11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354,044,880	352,927,300	1,117,580	155,744,340	155,370,350	373,990
54	○○군수	2020-03-11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748,200	718,360	29,840	329,130	319,150	9,980
		2020-03-11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4,031,760	4,027,160	4,600	1,773,570	1,772,030	1,540
		2020-03-11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7,761,070	7,619,630	141,440	3,414,090	3,366,760	47,3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No.	피고	① 거부처분일	당초신고일	경정청구일	반출기간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당초신고	경정신고	② 경정청구금액	당초신고	경정신고	③ 경정청구금액
		2020-03-11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12,469,170	12,294,850	174,320	5,485,180	5,426,850	58,330
		2020-03-11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16,676,930	16,624,290	52,640	7,336,180	7,318,560	17,620
55	○○시장	2020-03-11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36,625,470	35,165,100	1,460,370	16,111,540	15,622,840	488,700
		2020-03-11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172,442,320	172,245,340	196,980	75,857,370	75,791,460	65,910
		2020-03-11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296,009,380	290,614,660	5,394,720	130,214,520	128,409,220	1,805,300
		2020-03-11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396,584,340	391,040,260	5,544,080	174,457,450	172,602,160	1,855,290
		2020-03-11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481,671,870	480,151,420	1,520,450	211,887,450	211,378,650	508,800
56	○○시장	2020-03-11	2015-02-25	2020-01-28	2015년1월	6,833,750	6,561,270	272,480	3,006,160	2,914,980	91,180
		2020-03-11	2015-03-26	2020-01-28	2015년2월	29,832,380	29,798,300	34,080	13,123,260	13,111,860	11,400
		2020-03-11	2015-04-28	2020-01-28	2015년3월	53,564,570	52,588,370	976,200	23,563,050	23,236,370	326,680
		2020-03-11	2015-05-27	2020-01-28	2015년4월	71,244,300	70,248,340	995,960	31,340,370	31,007,070	333,300
		2020-03-11	2015-06-24	2020-01-28	2015년5월	83,789,310	83,524,820	264,490	36,858,920	36,770,410	88,510
57	○○군수	2020-03-11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239,100	229,560	9,540	105,180	101,990	3,190
		2020-03-11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988,830	987,700	1,130	434,990	434,610	380
		2020-03-11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2,989,140	2,934,660	54,480	1,314,920	1,296,690	18,230
		2020-03-11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5,444,310	5,368,200	76,110	2,394,950	2,369,480	25,470
		2020-03-11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9,237,420	9,208,260	29,160	4,063,540	4,053,780	9,760
58	○○시장	2020-03-12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18,558,350	17,818,370	739,980	8,163,820	7,916,190	247,630
		2020-03-12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80,097,320	80,005,830	91,490	35,234,810	35,204,190	30,620
		2020-03-12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143,265,000	140,654,020	2,610,980	63,022,270	62,148,530	873,740
		2020-03-12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188,576,410	185,940,200	2,636,210	82,954,760	82,072,570	882,190
		2020-03-12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228,078,820	227,358,870	719,950	100,331,870	100,090,940	240,930

대한민국법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No.	피고	① 거부처분일	당초신고일	경정청구일	반출기간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당초신고	경정신고	② 경정청구금액	당초신고	경정신고	③ 경정청구금액
59	○○시장	2020-03-12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4,398,130	4,222,760	175,370	1,934,740	1,876,050	58,690
		2020-03-12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19,308,880	19,286,820	22,060	8,493,970	8,486,590	7,380
		2020-03-12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32,458,690	31,867,140	591,550	14,278,580	14,080,620	197,960
		2020-03-12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45,168,910	44,537,470	631,440	19,869,800	19,658,490	211,310
		2020-03-12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48,297,770	48,145,310	152,460	21,246,190	21,195,170	51,020
60	○○시 ○○구청장	2020-03-12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57,603,200	55,306,370	2,296,830	25,339,640	24,571,030	768,610
		2020-03-12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251,123,810	250,836,950	286,860	110,469,360	110,373,370	95,990
		2020-03-12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457,206,910	448,874,400	8,332,510	201,125,320	198,336,900	2,788,420
		2020-03-12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604,203,480	595,756,980	8,446,500	265,789,110	262,962,550	2,826,560
		2020-03-12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722,953,450	720,671,380	2,282,070	318,027,220	317,263,540	763,680
61	○○군수	2020-03-12	2015-02-25	2020-01-23	2015년1월	2,336,080	2,242,930	93,150	1,027,640	996,470	31,170
		2020-03-12	2015-03-26	2020-01-23	2015년2월	12,574,430	12,560,070	14,360	5,531,490	5,526,680	4,810
		2020-03-12	2015-04-28	2020-01-23	2015년3월	21,853,160	21,454,890	398,270	9,613,200	9,479,920	133,280
		2020-03-12	2015-05-27	2020-01-23	2015년4월	30,472,520	30,046,530	425,990	13,404,860	13,262,300	142,560
		2020-03-12	2015-06-24	2020-01-23	2015년5월	37,932,920	37,813,190	119,730	16,686,690	16,646,620	40,070
62	○○시장	2020-03-12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10,394,090	9,979,640	414,450	4,572,360	4,433,670	138,690
		2020-03-12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51,687,520	51,628,480	59,040	22,737,340	22,717,580	19,760
		2020-03-12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104,915,180	103,003,120	1,912,060	46,152,190	45,512,330	639,860
		2020-03-12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150,794,440	148,686,400	2,108,040	66,334,470	65,629,030	705,440
		2020-03-12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182,144,930	181,569,970	574,960	80,125,550	79,933,140	192,410
63	○○군수	2020-03-12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1,203,830	1,155,830	48,000	529,560	513,500	16,060
		2020-03-12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6,127,650	6,120,650	7,000	2,695,550	2,693,210	2,340
		2020-03-12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12,985,680	12,749,020	236,660	5,712,400	5,633,200	79,2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No.	피고	① 거부처분일	당초신고일	경정청구일	반출기간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당초신고	경정신고	② 경정청구금액	당초신고	경정신고	③ 경정청구금액
		2020-03-12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17,729,830	17,481,980	247,850	7,799,350	7,716,410	82,940
		2020-03-12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22,935,850	22,863,450	72,400	10,089,480	10,065,250	24,230
64	○○광역시장	2020-03-12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194,278,820	186,532,310	7,746,510	85,463,250	82,870,940	2,592,310
		2020-03-12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816,351,070	815,418,540	932,530	359,112,830	358,800,770	312,060
		2020-03-12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1,464,242,910	1,437,557,360	26,685,550	644,120,450	635,190,320	8,930,130
		2020-03-12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1,925,712,140	1,898,791,530	26,920,610	847,120,770	838,111,980	9,008,790
		2020-03-12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2,198,506,650	2,191,566,850	6,939,800	967,123,070	964,800,720	2,322,350
65	○○시장	2020-03-12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8,859,540	8,506,280	353,260	3,897,310	3,779,090	118,220
		2020-03-12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41,088,510	41,041,580	46,930	18,074,830	18,059,130	15,700
		2020-03-12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65,507,200	64,313,340	1,193,860	28,816,610	28,417,100	399,510
		2020-03-12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90,202,360	88,941,370	1,260,990	39,680,020	39,258,040	421,980
		2020-03-12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102,903,130	102,578,300	324,830	45,267,080	45,158,380	108,700
66	○○군수	2020-03-12	2015-02-25	2020-01-29	2015년1월	1,943,300	1,865,820	77,480	854,860	828,930	25,930
		2020-03-12	2015-03-26	2020-01-29	2015년2월	10,739,240	10,726,970	12,270	4,724,190	4,720,080	4,110
		2020-03-12	2015-04-28	2020-01-29	2015년3월	18,341,030	18,006,770	334,260	8,068,220	7,956,360	111,860
		2020-03-12	2015-05-27	2020-01-29	2015년4월	26,514,970	26,144,300	370,670	11,663,930	11,539,890	124,040
		2020-03-12	2015-06-24	2020-01-29	2015년5월	30,608,770	30,512,150	96,620	13,464,800	13,432,460	32,340
67	○○시장	2020-03-12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46,872,880	45,003,910	1,868,970	20,619,380	19,993,940	625,440
		2020-03-12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199,165,250	198,937,740	227,510	87,612,790	87,536,660	76,130
		2020-03-12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355,527,830	349,048,400	6,479,430	156,396,690	154,228,400	2,168,290
		2020-03-12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454,809,180	448,451,150	6,358,030	200,070,560	197,942,890	2,127,670
		2020-03-12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523,178,100	521,526,640	1,651,460	230,146,050	229,593,400	552,65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No.	피고	① 거부처분일	당초신고일	경정청구일	반출기간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당초신고	경정신고	② 경정청구금액	당초신고	경정신고	③ 경정청구금액
68	○○시장	2020-03-12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8,290,660	7,960,090	330,570	3,647,060	3,536,430	110,630
		2020-03-12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38,509,440	38,465,450	43,990	16,940,300	16,925,580	14,720
		2020-03-12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63,182,820	62,031,330	1,151,490	27,794,120	27,408,780	385,340
		2020-03-12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91,426,680	90,148,580	1,278,100	40,218,600	39,790,890	427,710
		2020-03-12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104,938,060	104,606,820	331,240	46,162,250	46,051,400	110,850
69	○○군수	2020-03-12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2,262,470	2,172,250	90,220	995,260	965,070	30,190
		2020-03-12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11,902,020	11,888,430	13,590	5,235,700	5,231,150	4,550
		2020-03-12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21,079,150	20,694,980	384,170	9,272,710	9,144,160	128,550
		2020-03-12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33,247,430	32,782,640	464,790	14,625,540	14,470,000	155,540
		2020-03-12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37,012,790	36,895,950	116,840	16,281,920	16,242,820	39,100
70	○○군수	2020-03-12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4,394,910	4,219,670	175,240	1,933,320	1,874,670	58,650
		2020-03-12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20,366,940	20,343,670	23,270	8,959,410	8,951,630	7,780
		2020-03-12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37,756,520	37,068,410	688,110	16,609,090	16,378,820	230,270
		2020-03-12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62,306,120	61,435,110	871,010	27,408,460	27,116,980	291,480
		2020-03-12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79,277,840	79,027,600	250,240	34,874,320	34,790,580	83,740
71	○○군수	2020-03-12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3,172,670	3,046,160	126,510	1,395,650	1,353,320	42,330
		2020-03-12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14,455,480	14,438,960	16,520	6,358,960	6,353,440	5,520
		2020-03-12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24,738,870	24,288,010	450,860	10,882,630	10,731,750	150,880
		2020-03-12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32,783,100	32,324,800	458,300	14,421,280	14,267,920	153,360
		2020-03-12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36,495,490	36,380,290	115,200	16,054,360	16,015,810	38,550
72	○○시장	2020-03-18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18,497,500	17,759,950	737,550	8,137,050	7,890,230	246,820
		2020-03-18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80,676,240	80,584,090	92,150	35,489,480	35,458,640	30,840
		2020-03-18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142,019,140	139,430,860	2,588,280	62,474,220	61,608,070	866,150

대한민국법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No.	피고	① 거부처분일	당초신고일	경정청구일	반출기간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당초신고	경정신고	② 경정청구금액	당초신고	경정신고	③ 경정청구금액
		2020-03-18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188,446,820	185,812,410	2,634,410	82,897,750	82,016,170	881,580
		2020-03-18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224,391,960	223,683,650	708,310	98,710,020	98,472,990	237,030
73	○○시장	2020-03-16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66,649,850	63,992,310	2,657,540	29,319,270	28,429,940	889,330
		2020-03-16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315,936,380	315,575,480	360,900	138,980,410	138,859,640	120,770
		2020-03-16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538,516,940	528,702,570	9,814,370	236,893,600	233,609,290	3,284,310
		2020-03-16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733,456,420	723,203,020	10,253,400	322,647,480	319,216,250	3,431,230
		2020-03-16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853,001,100	850,308,520	2,692,580	375,235,180	374,334,130	901,050
74	○○시장	2020-03-17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68,741,730	66,000,780	2,740,950	30,239,480	29,322,240	917,240
		2020-03-17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310,491,920	310,137,240	354,680	136,585,390	136,466,700	118,690
		2020-03-17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536,737,630	526,955,690	9,781,940	236,110,880	232,837,420	3,273,460
		2020-03-17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730,375,430	720,165,110	10,210,320	321,292,150	317,875,340	3,416,810
		2020-03-17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868,685,800	865,943,710	2,742,090	382,134,880	381,217,260	917,620
75	○○시장	2020-03-17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3,394,440	3,259,090	135,350	1,493,210	1,447,920	45,290
		2020-03-17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14,241,980	14,225,710	16,270	6,265,040	6,259,600	5,440
		2020-03-17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24,659,260	24,209,850	449,410	10,847,610	10,697,210	150,400
		2020-03-17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32,892,500	32,432,680	459,820	14,469,410	14,315,530	153,880
		2020-03-17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40,022,840	39,896,500	126,340	17,606,040	17,563,770	42,270
76	○○시장	2020-03-17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15,754,950	15,126,750	628,200	6,930,600	6,720,380	210,220
		2020-03-17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74,626,790	74,541,550	85,240	32,828,320	32,799,800	28,520
		2020-03-17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131,045,780	128,657,490	2,388,290	57,647,030	56,847,810	799,220
		2020-03-17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184,779,720	182,196,580	2,583,140	81,284,600	80,420,170	864,430
		2020-03-17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227,193,830	226,476,670	717,160	99,942,560	99,702,570	239,990

대한민국법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No.	피고	① 거부처분일	당초신고일	경정청구일	반출기간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당초신고	경정신고	② 경정청구금액	당초신고	경정신고	③ 경정청구금액
77	○○시 ○○구청장	2020-03-18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19,224,900	18,458,340	766,560	8,457,030	8,200,510	256,520
		2020-03-18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84,604,120	84,507,480	96,640	37,217,350	37,185,010	32,340
		2020-03-18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153,613,950	150,814,360	2,799,590	67,574,770	66,637,910	936,860
		2020-03-18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196,367,360	193,622,230	2,745,130	86,382,000	85,463,360	918,640
		2020-03-18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239,231,850	238,476,690	755,160	105,238,090	104,985,380	252,710
78	○○시 ○○구청장	2020-03-18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17,006,640	16,328,530	678,110	7,481,220	7,254,300	226,920
		2020-03-18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74,842,110	74,756,610	85,500	32,923,040	32,894,430	28,610
		2020-03-18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135,889,260	133,412,700	2,476,560	59,777,690	58,948,920	828,770
		2020-03-18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173,709,590	171,281,200	2,428,390	76,414,850	75,602,210	812,640
		2020-03-18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211,628,180	210,960,150	668,030	93,095,230	92,871,680	223,550
79	○○시 ○○구청장	2020-03-18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37,710,380	36,206,750	1,503,630	16,588,800	16,085,620	503,180
		2020-03-18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165,954,240	165,764,670	189,570	73,003,270	72,939,830	63,440
		2020-03-18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301,319,660	295,828,170	5,491,490	132,550,520	130,712,830	1,837,690
		2020-03-18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385,182,130	379,797,450	5,384,680	169,441,610	167,639,670	1,801,940
		2020-03-18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469,262,480	467,781,200	1,481,280	206,428,560	205,932,860	495,700
80	○○광역시장	2020-03-18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99,202,540	95,247,020	3,955,520	43,639,190	42,315,510	1,323,680
		2020-03-18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421,121,910	420,640,860	481,050	185,251,520	185,090,540	160,980
		2020-03-18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707,211,160	694,322,370	12,888,790	311,102,180	306,789,040	4,313,140
		2020-03-18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978,703,840	965,021,990	13,681,850	430,531,820	425,953,280	4,578,540
		2020-03-18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1,067,087,700	1,063,719,340	3,368,360	469,411,880	468,284,680	1,127,200
81	○○군수	2020-03-18	2015-03-02	2020-03-03	2015년1월	3,029,340	2,908,550	120,790	1,332,600	1,292,180	40,420
		2020-03-18	2015-03-31	2020-03-03	2015년2월	13,698,120	13,682,470	15,650	6,025,800	6,020,560	5,240
		2020-03-18	2015-04-30	2020-03-03	2015년3월	21,248,820	20,861,570	387,250	9,347,360	9,217,760	129,600

대한민국법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No.	피고	① 거부처분일	당초신고일	경정청구일	반출기간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당초신고	경정신고	② 경정청구금액	당초신고	경정신고	③ 경정청구금액
		2020-03-18	2015-06-01	2020-03-03	2015년4월	32,026,360	31,578,650	447,710	14,088,390	13,938,570	149,820
		2020-03-18	2015-06-30	2020-03-03	2015년5월	37,783,320	37,664,060	119,260	16,620,880	16,580,970	39,910
82	○○군수	2020-03-18	2015-02-25	2020-01-23	2015년1월	2,221,090	2,132,530	88,560	977,060	947,420	29,640
		2020-03-18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9,873,110	9,861,830	11,280	4,343,180	4,339,400	3,780
		2020-03-18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20,445,750	20,073,130	372,620	8,994,080	8,869,390	124,690
		2020-03-18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26,625,030	26,252,820	372,210	11,712,350	11,587,790	124,560
		2020-03-18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34,218,130	34,110,110	108,020	15,052,550	15,016,410	36,140
83	○○시장	2020-03-18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45,114,140	43,315,290	1,798,850	19,845,710	19,243,740	601,970
		2020-03-18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211,542,820	211,301,180	241,640	93,057,690	92,976,820	80,870
		2020-03-18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372,131,400	365,349,380	6,782,020	163,700,600	161,431,040	2,269,560
		2020-03-18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510,288,430	503,154,820	7,133,610	224,475,880	222,088,660	2,387,220
		2020-03-18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607,850,610	605,931,870	1,918,740	267,393,480	266,751,390	642,090
84	○○시장	2020-03-18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16,525,850	15,866,910	658,940	7,269,720	7,049,210	220,510
		2020-03-18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87,987,360	87,886,850	100,510	38,705,640	38,672,000	33,640
		2020-03-18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157,330,940	154,463,610	2,867,330	69,209,880	68,250,350	959,530
		2020-03-18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214,295,580	211,299,820	2,995,760	94,268,620	93,266,110	1,002,510
		2020-03-18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271,234,270	270,378,100	856,170	119,315,950	119,029,440	286,510
85	○○군수	2020-03-18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3,556,570	3,414,760	141,810	1,564,530	1,517,080	47,450
		2020-03-18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14,070,280	14,054,210	16,070	6,189,510	6,184,130	5,380
		2020-03-18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27,561,240	27,058,940	502,300	12,124,190	11,956,100	168,090
		2020-03-18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39,296,080	38,746,740	549,340	17,286,340	17,102,510	183,830
		2020-03-18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43,965,640	43,826,860	138,780	19,340,480	19,294,040	46,440

대한민국법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No.	피고	① 거부처분일	당초신고일	경정청구일	반출기간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당초신고	경정신고	② 경정청구금액	당초신고	경정신고	③ 경정청구금액
86	○○군수	2020-03-18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862,370	827,990	34,380	379,360	367,850	11,510
		2020-03-18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3,285,640	3,281,880	3,760	1,445,350	1,444,090	1,260
		2020-03-18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4,806,800	4,719,190	87,610	2,114,510	2,085,190	29,320
		2020-03-18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7,235,850	7,134,700	101,150	3,183,050	3,149,200	33,850
		2020-03-18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11,472,430	11,436,210	36,220	5,046,720	5,034,600	12,120
87	○○시장	2020-03-18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41,110,650	39,471,440	1,639,210	18,084,570	17,536,020	548,550
		2020-03-18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182,103,730	181,895,710	208,020	80,107,430	80,037,820	69,610
		2020-03-18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340,120,730	333,922,090	6,198,640	149,619,110	147,544,780	2,074,330
		2020-03-18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429,090,010	423,091,520	5,998,490	188,756,690	186,749,340	2,007,350
		2020-03-18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490,574,040	489,025,500	1,548,540	215,803,520	215,285,310	518,210
88	○○시장	2020-03-18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15,086,130	14,484,600	601,530	6,636,390	6,435,090	201,300
		2020-03-18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69,917,220	69,837,350	79,870	30,756,580	30,729,860	26,720
		2020-03-18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120,977,760	118,772,960	2,204,800	53,218,110	52,480,290	737,820
		2020-03-18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171,019,150	168,628,380	2,390,770	75,231,320	74,431,270	800,050
		2020-03-18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216,149,470	215,467,180	682,290	95,084,150	94,855,820	228,330
89	○○시장	2020-03-18	2015-02-25	2020-01-23	2015년1월	6,757,990	6,488,530	269,460	2,972,840	2,882,660	90,180
		2020-03-18	2015-03-26	2020-01-23	2015년2월	31,598,800	31,562,710	36,090	13,900,310	13,888,230	12,080
		2020-03-18	2015-04-28	2020-01-23	2015년3월	51,664,400	50,722,820	941,580	22,727,170	22,412,070	315,100
		2020-03-18	2015-05-27	2020-01-23	2015년4월	71,463,770	70,464,740	999,030	31,436,910	31,102,590	334,320
		2020-03-18	2015-06-24	2020-01-23	2015년5월	84,599,500	84,332,460	267,040	37,215,320	37,125,950	89,370
90	○○시장	2020-03-18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9,091,250	8,728,750	362,500	3,999,240	3,877,930	121,310
		2020-03-18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42,631,100	42,582,400	48,700	18,753,420	18,737,120	16,300
		2020-03-18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79,409,850	77,962,620	1,447,230	34,932,390	34,448,080	484,3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No.	피고	① 거부처분일	당초신고일	경정청구일	반출기간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당초신고	경정신고	② 경정청구금액	당초신고	경정신고	③ 경정청구금액
		2020-03-18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106,726,110	105,234,130	1,491,980	46,948,820	46,449,530	499,290
		2020-03-18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126,914,130	126,513,510	400,620	55,829,520	55,695,460	134,060
91	○○시장	2020-03-18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52,953,730	50,842,300	2,111,430	23,294,340	22,587,770	706,570
		2020-03-18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225,232,850	224,975,570	257,280	99,079,930	98,993,830	86,100
		2020-03-18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420,833,970	413,164,350	7,669,620	185,124,860	182,558,280	2,566,580
		2020-03-18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557,804,390	550,006,530	7,797,860	245,378,150	242,768,650	2,609,500
		2020-03-18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662,659,640	660,567,890	2,091,750	291,503,970	290,803,990	699,980
92	○○시장	2020-03-20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54,207,540	52,046,120	2,161,420	23,845,890	23,122,590	723,300
		2020-03-20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238,063,940	237,792,000	271,940	104,724,330	104,633,320	91,010
		2020-03-20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449,261,050	441,073,350	8,187,700	197,629,930	194,889,980	2,739,950
		2020-03-20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595,273,760	586,952,100	8,321,660	261,860,930	259,076,140	2,784,790
		2020-03-20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736,894,310	734,568,230	2,326,080	324,159,800	323,381,400	778,400
93	○○○시장	2020-03-20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37,677,930	36,175,590	1,502,340	16,574,520	16,071,770	502,750
		2020-03-20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160,709,300	160,525,710	183,590	70,696,020	70,634,580	61,440
		2020-03-20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271,373,350	266,427,630	4,945,720	119,377,140	117,722,080	1,655,060
		2020-03-20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357,286,950	352,292,230	4,994,720	157,170,530	155,499,080	1,671,450
		2020-03-20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438,196,480	436,813,270	1,383,210	192,762,630	192,299,750	462,880
94	○○군수	2020-03-20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5,004,350	4,804,810	199,540	2,201,410	2,134,640	66,770
		2020-03-20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23,472,340	23,445,530	26,810	10,325,480	10,316,510	8,970
		2020-03-20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46,703,020	45,851,870	851,150	20,544,660	20,259,830	284,830
		2020-03-20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65,293,330	64,380,560	912,770	28,722,530	28,417,080	305,450
		2020-03-20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79,275,140	79,024,900	250,240	34,873,130	34,789,390	83,74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No.	피고	① 거부처분일	당초신고일	경정청구일	반출기간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당초신고	경정신고	② 경정청구금액	당초신고	경정신고	③ 경정청구금액
95	○○군수	2020-03-20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4,893,400	4,698,280	195,120	2,152,600	2,087,310	65,290
		2020-03-20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24,913,800	24,885,340	28,460	10,959,580	10,950,050	9,530
		2020-03-20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41,104,190	40,355,080	749,110	18,081,730	17,831,050	250,680
		2020-03-20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57,718,180	56,911,300	806,880	25,390,220	25,120,210	270,010
		2020-03-20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67,754,940	67,541,070	213,870	29,805,400	29,733,820	71,580
96	○○시장	2020-03-19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18,924,660	18,170,080	754,580	8,324,960	8,072,440	252,520
		2020-03-19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89,694,910	89,592,450	102,460	39,456,790	39,422,500	34,290
		2020-03-19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159,132,910	156,232,740	2,900,170	70,002,560	69,032,040	970,520
		2020-03-19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212,942,970	209,966,120	2,976,850	93,673,610	92,677,430	996,180
		2020-03-19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248,048,780	247,265,790	782,990	109,116,660	108,854,640	262,020
97-1	○○특별 자치도지사	2020-03-25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64,886,410	62,299,180	2,587,230	28,543,530	27,677,730	865,800
		2020-03-25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331,715,560	331,336,640	378,920	145,921,670	145,794,870	126,800
		2020-03-25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539,498,400	529,666,150	9,832,250	237,325,350	234,035,050	3,290,300
		2020-03-25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803,135,160	791,907,690	11,227,470	353,299,150	349,541,960	3,757,190
		2020-03-25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850,239,790	847,555,920	2,683,870	374,020,480	373,122,340	898,140
97-2	○○특별 자치도지사	2020-03-25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28,522,730	27,385,440	1,137,290	12,547,150	12,166,560	380,590
		2020-03-25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142,197,330	142,034,890	162,440	62,552,600	62,498,240	54,360
		2020-03-25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213,006,630	209,124,620	3,882,010	93,701,610	92,402,530	1,299,080
		2020-03-25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312,622,740	308,252,410	4,370,330	137,522,740	136,060,240	1,462,500
		2020-03-25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343,397,050	342,313,090	1,083,960	151,060,360	150,697,620	362,740
98	○○시장	2020-03-25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15,827,620	15,196,520	631,100	6,962,570	6,751,370	211,200
		2020-03-25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69,442,130	69,362,810	79,320	30,547,590	30,521,040	26,550
		2020-03-25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112,159,670	110,115,580	2,044,090	49,339,040	48,655,000	684,04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No.	피고	① 거부처분일	당초신고일	경정청구일	반출기간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당초신고	경정신고	② 경정청구금액	당초신고	경정신고	③ 경정청구금액
		2020-03-25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149,646,970	147,554,970	2,092,000	65,829,700	65,129,630	700,070
		2020-03-25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184,799,900	184,216,560	583,340	81,293,470	81,098,260	195,210
99	○○군수	2020-03-25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3,346,480	3,213,050	133,430	1,472,120	1,427,460	44,660
		2020-03-25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16,492,490	16,473,650	18,840	7,255,040	7,248,740	6,300
		2020-03-25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27,211,420	26,715,500	495,920	11,970,300	11,804,340	165,960
		2020-03-25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39,487,550	38,935,530	552,020	17,370,570	17,185,840	184,730
		2020-03-25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51,753,020	51,589,650	163,370	22,766,150	22,711,480	54,670
100	○○시장	2020-03-31	2015-03-02	2020-01-30	2015년1월	33,530,180	32,193,220	1,336,960	14,749,920	14,302,520	447,400
		2020-03-31	2015-03-31	2020-01-30	2015년2월	160,862,120	160,678,360	183,760	70,763,240	70,701,750	61,490
		2020-03-31	2015-04-30	2020-01-30	2015년3월	275,016,230	270,004,110	5,012,120	120,979,640	119,302,370	1,677,270
		2020-03-31	2015-06-01	2020-01-30	2015년4월	384,511,770	379,136,460	5,375,310	169,146,720	167,347,920	1,798,800
		2020-03-31	2015-06-30	2020-01-30	2015년5월	468,643,040	467,163,720	1,479,320	206,156,070	205,661,030	495,040
101	○○시장	2020-03-31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44,478,370	42,704,870	1,773,500	19,566,030	18,972,540	593,490
		2020-03-31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198,975,580	198,748,280	227,300	87,529,350	87,453,290	76,060
		2020-03-31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344,172,110	337,899,640	6,272,470	151,401,310	149,302,270	2,099,040
		2020-03-31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457,246,100	450,854,000	6,392,100	201,142,560	199,003,490	2,139,070
		2020-03-31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545,649,830	543,927,440	1,722,390	240,031,360	239,454,970	576,390
102	○○시장	2020-03-31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10,497,250	10,078,690	418,560	4,617,740	4,477,670	140,070
		2020-03-31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47,305,610	47,251,580	54,030	20,809,740	20,791,650	18,090
		2020-03-31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84,716,970	83,173,020	1,543,950	37,266,990	36,750,320	516,670
		2020-03-31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113,013,780	111,433,890	1,579,890	49,714,760	49,186,060	528,700
		2020-03-31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135,518,900	135,091,120	427,780	59,614,760	59,471,610	143,15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No.	피고	① 거부처분일	당초신고일	경정청구일	반출기간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당초신고	경정신고	② 경정청구금액	당초신고	경정신고	③ 경정청구금액
103	○○시장	2020-03-31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27,050,640	25,972,050	1,078,590	11,899,570	11,538,630	360,940
		2020-03-31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126,977,740	126,832,690	145,050	55,857,510	55,808,970	48,540
		2020-03-31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227,932,000	223,777,980	4,154,020	100,267,280	98,877,170	1,390,110
		2020-03-31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311,330,690	306,978,430	4,352,260	136,954,370	135,497,910	1,456,460
		2020-03-31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349,961,480	348,856,800	1,104,680	153,948,050	153,578,380	369,670
104	○○광역시장	2020-03-31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98,308,190	94,388,330	3,919,860	43,245,770	41,934,020	1,311,750
		2020-03-31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430,560,380	430,068,540	491,840	189,403,510	189,238,920	164,590
		2020-03-31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806,897,670	792,192,110	14,705,560	354,954,280	350,033,170	4,921,110
		2020-03-31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1,052,497,730	1,037,784,270	14,713,460	462,993,750	458,069,990	4,923,760
		2020-03-31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1,258,755,740	1,254,782,360	3,973,380	553,726,650	552,396,980	1,329,670
105	○○시장	2020-04-03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8,312,820	7,981,370	331,450	3,656,810	3,545,890	110,920
		2020-04-03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41,711,030	41,663,390	47,640	18,348,680	18,332,740	15,940
		2020-04-03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78,559,130	77,127,400	1,431,730	34,558,160	34,079,040	479,120
		2020-04-03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104,750,270	103,285,910	1,464,360	46,079,640	45,589,600	490,040
		2020-04-03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129,560,090	129,151,120	408,970	56,993,480	56,856,620	136,860
106	○○시장	2020-04-03	2015-02-25	2020-01-23	2015년1월	23,512,470	22,574,950	937,520	10,343,130	10,029,400	313,730
		2020-04-03	2015-03-26	2020-01-23	2015년2월	105,484,870	105,364,370	120,500	46,402,790	46,362,470	40,320
		2020-04-03	2015-04-28	2020-01-23	2015년3월	184,247,750	180,889,870	3,357,880	81,050,580	79,926,890	1,123,690
		2020-04-03	2015-05-27	2020-01-23	2015년4월	251,955,770	248,433,540	3,522,230	110,835,340	109,656,650	1,178,690
		2020-04-03	2015-06-24	2020-01-23	2015년5월	309,223,080	308,246,990	976,090	136,027,230	135,700,590	326,640
107	○○시장	2020-04-03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41,714,190	40,050,910	1,663,280	18,350,070	17,793,460	556,610
		2020-04-03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177,916,000	177,712,760	203,240	78,265,240	78,197,230	68,010
		2020-04-03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317,050,170	311,271,990	5,778,180	139,470,370	137,536,740	1,933,6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No.	피고	① 거부처분일	당초신고일	경정청구일	반출기간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당초신고	경정신고	② 경정청구금액	당초신고	경정신고	③ 경정청구금액
		2020-04-03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429,924,900	423,914,730	6,010,170	189,123,960	187,112,700	2,011,260
		2020-04-03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509,970,840	508,361,070	1,609,770	224,336,170	223,797,470	538,700
108	○○군수	2020-04-06	2015-03-02	2020-01-28	2015년1월	4,520,500	4,340,260	180,240	1,988,570	1,928,250	60,320
		2020-04-06	2015-03-31	2020-01-28	2015년2월	25,958,370	25,928,720	29,650	11,419,090	11,409,160	9,930
		2020-04-06	2015-04-30	2020-01-28	2015년3월	44,612,250	43,799,200	813,050	19,624,930	19,352,850	272,080
		2020-04-06	2015-06-01	2020-01-28	2015년4월	73,238,380	72,214,540	1,023,840	32,217,560	31,874,940	342,620
		2020-04-06	2015-06-30	2020-01-28	2015년5월	104,406,350	104,076,780	329,570	45,928,350	45,818,060	110,290
109	○○시장	2020-04-06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3,946,520	3,789,160	157,360	1,736,070	1,683,410	52,660
		2020-04-06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20,262,210	20,239,060	23,150	8,913,340	8,905,600	7,740
		2020-04-06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33,177,500	32,572,850	604,650	14,594,780	14,392,440	202,340
		2020-04-06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47,248,300	46,587,790	660,510	20,784,520	20,563,490	221,030
		2020-04-06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55,051,450	54,877,680	173,770	24,217,130	24,158,980	58,150
110	○○○시장	2020-04-06	2015-03-02	2020-01-28	2015년1월	10,258,150	9,849,120	409,030	4,512,560	4,375,680	136,880
		2020-04-06	2015-03-31	2020-01-28	2015년2월	51,120,290	51,061,890	58,400	22,487,810	22,468,270	19,540
		2020-04-06	2015-04-30	2020-01-28	2015년3월	83,913,320	82,384,010	1,529,310	36,913,470	36,401,690	511,780
		2020-04-06	2015-06-01	2020-01-28	2015년4월	111,637,070	110,076,430	1,560,640	49,109,140	48,586,890	522,250
		2020-04-06	2015-06-30	2020-01-28	2015년5월	130,956,060	130,542,690	413,370	57,607,570	57,469,240	138,330
111	○○군수	2020-04-08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4,244,060	4,074,830	169,230	1,866,960	1,810,330	56,630
		2020-04-08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22,358,100	22,332,560	25,540	9,835,330	9,826,780	8,550
		2020-04-08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39,225,520	38,510,640	714,880	17,255,300	17,016,070	239,230
		2020-04-08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53,908,460	53,154,850	753,610	23,714,330	23,462,140	252,190
		2020-04-08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73,410,950	73,179,220	231,730	32,293,470	32,215,930	77,540

대한민국법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No.	피고	① 거부처분일	당초신고일	경정청구일	반출기간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당초신고	경정신고	② 경정청구금액	당초신고	경정신고	③ 경정청구금액
112	○○군수	2020-04-08	2015-03-02	2020-02-04	2015년1월	143,720	137,990	5,730	63,220	61,300	1,920
		2020-04-08	2015-03-31	2020-02-04	2015년2월	2,917,070	2,913,740	3,330	1,283,220	1,282,100	1,120
		2020-04-08	2015-04-30	2020-02-04	2015년3월	6,113,670	6,002,250	111,420	2,689,400	2,652,120	37,280
		2020-04-08	2015-06-01	2020-02-04	2015년4월	15,677,790	15,458,620	219,170	6,896,660	6,823,320	73,340
		2020-04-08	2015-06-30	2020-02-04	2015년5월	22,926,840	22,854,470	72,370	10,085,510	10,061,290	24,220
113	○○시장	2020-04-08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16,573,540	15,912,700	660,840	7,290,700	7,069,550	221,150
		2020-04-08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70,773,470	70,692,620	80,850	31,133,250	31,106,190	27,060
		2020-04-08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122,325,310	120,095,960	2,229,350	53,810,900	53,064,860	746,040
		2020-04-08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159,850,500	157,615,860	2,234,640	70,318,230	69,570,420	747,810
		2020-04-08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193,105,470	192,495,920	609,550	84,947,090	84,743,110	203,980
114	○○시장	2020-04-08	2015-03-02	2020-01-28	2015년1월	17,416,030	16,721,600	694,430	7,661,310	7,428,920	232,390
		2020-04-08	2015-03-31	2020-01-28	2015년2월	77,613,540	77,524,880	88,660	34,142,190	34,112,520	29,670
		2020-04-08	2015-04-30	2020-01-28	2015년3월	143,096,480	140,488,580	2,607,900	62,948,140	62,075,420	872,720
		2020-04-08	2015-06-01	2020-01-28	2015년4월	197,624,650	194,861,950	2,762,700	86,935,080	86,010,560	924,520
		2020-04-08	2015-06-30	2020-01-28	2015년5월	233,330,180	232,593,650	736,530	102,641,950	102,395,470	246,480
115	○○시 ○○구청장	2020-04-14	2015-03-02	2020-01-28	2015년1월	52,361,220	50,273,410	2,087,810	23,033,700	22,335,030	698,670
		2020-04-14	2015-03-31	2020-01-28	2015년2월	230,805,860	230,542,210	263,650	101,531,500	101,443,270	88,230
		2020-04-14	2015-04-30	2020-01-28	2015년3월	422,046,130	414,354,420	7,691,710	185,658,090	183,084,110	2,573,980
		2020-04-14	2015-06-01	2020-01-28	2015년4월	565,867,310	557,956,730	7,910,580	248,925,030	246,277,810	2,647,220
		2020-04-14	2015-06-30	2020-01-28	2015년5월	682,927,010	680,771,280	2,155,730	300,419,590	299,698,190	721,400
116	○○군수	2020-04-14	2015-03-02	2020-01-28	2015년1월	1,690,770	1,623,350	67,420	743,770	721,210	22,560
		2020-04-14	2015-03-31	2020-01-28	2015년2월	7,389,770	7,381,330	8,440	3,250,760	3,247,930	2,830
		2020-04-14	2015-04-30	2020-01-28	2015년3월	10,788,570	10,591,950	196,620	4,745,890	4,680,090	65,800

대한민국법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No.	피고	① 거부처분일	당초신고일	경정청구일	반출기간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당초신고	경정신고	② 경정청구금액	당초신고	경정신고	③ 경정청구금액
		2020-04-14	2015-06-01	2020-01-28	2015년4월	16,125,840	15,900,410	225,430	7,093,760	7,018,320	75,440
		2020-04-14	2015-06-30	2020-01-28	2015년5월	21,830,960	21,762,050	68,910	9,603,440	9,580,380	23,060
117	○○시장	2020-04-14	2015-03-02	2020-01-28	2015년1월	44,868,320	43,079,280	1,789,040	19,737,570	19,138,880	598,690
		2020-04-14	2015-03-31	2020-01-28	2015년2월	203,811,900	203,579,080	232,820	89,656,850	89,578,940	77,910
		2020-04-14	2015-04-30	2020-01-28	2015년3월	350,501,960	344,114,130	6,387,830	154,185,810	152,048,170	2,137,640
		2020-04-14	2015-06-01	2020-01-28	2015년4월	480,728,280	474,007,910	6,720,370	211,472,370	209,223,440	2,248,930
		2020-04-14	2015-06-30	2020-01-28	2015년5월	534,618,990	532,931,420	1,687,570	235,178,890	234,614,160	564,730
118	○○군수	2020-04-14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6,061,910	5,820,200	241,710	2,666,630	2,585,740	80,890
		2020-04-14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27,251,510	27,220,380	31,130	11,987,930	11,977,520	10,410
		2020-04-14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44,886,530	44,068,480	818,050	19,745,580	19,471,830	273,750
		2020-04-14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61,242,660	60,386,510	856,150	26,940,640	26,654,140	286,500
		2020-04-14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70,710,920	70,487,710	223,210	31,105,730	31,031,040	74,690
119	○○○도 ○○군수	2020-02-11	2015-03-02	2020-01-23	2015년1월	7,115,160	6,831,460	283,700	3,129,960	3,035,020	94,940
		2020-02-11	2015-03-31	2020-01-23	2015년2월	31,591,160	31,555,070	36,090	13,896,950	13,884,870	12,080
		2020-02-11	2015-04-30	2020-01-23	2015년3월	50,289,530	49,373,010	916,520	22,122,360	21,815,660	306,700
		2020-02-11	2015-06-01	2020-01-23	2015년4월	66,207,660	65,282,110	925,550	29,124,750	28,815,020	309,730
		2020-02-11	2015-06-30	2020-01-23	2015년5월	75,500,860	75,262,540	238,320	33,212,830	33,133,070	79,760
합계						138,595,149,840	137,162,664,320	1,432,485,520	60,968,007,119	60,488,633,240	479,373,879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별지3]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4. 12. 31. 법률 제129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4. "제조자"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를 말한다.
7. "소매인"이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매도"란 담배를 제조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소매인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9. "판매"란 담배를 소매인이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제49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될 때에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제53조(미납세 반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3.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7조에 따른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57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8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5. 제6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3조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2. 제54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3.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제63조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5.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해당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2조(수시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증거자료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의 상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에 있는 경우

2. 제61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②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

부칙 <제12855호, 2014. 12.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소비세 등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구 지방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 등을 말한다.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28

4. 담배소비세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시·군별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전월 중 해당 시·군에서 팔린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
2. 전월 중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법 제63조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한 세액을 빼고, 법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총세액
3. 전월 중 전 시·군지역(시·군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실제 소매인에게 팔린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총세액
4.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해당 시·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text{해당 시·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 \text{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 \times \frac{\text{제2호에 따른 총세액}}{\text{제3호에 따른 총세액}}$$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5. 12. 31. 행정자치부령 제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의 담배소비세 신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끝.